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이번주 결론

14일 최씨·안중범 전 수석 선고기일…檢 징역 25년 구형

대법 "강요죄는 무죄" 파기환송…형량 변동은 크지 않을 듯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선고가 내려진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빌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1년이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 요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

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선고가 내려진다.



마스크 착용한 범투본 회원들

마스크를 착용한 문재인아야범국민 투쟁 본부 회원들이 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버리면 끝?...처리과정까지 책임진다

환경부, 개정안 입법예고
2톤이상 배출 시 확인 의무

앞으로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한 이들은 자신이 버린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예방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가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해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 처리 과정

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월 평균 2톤 이상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오니를 내놓거나, 공사과정에서 10톤 이상 폐기물을 내놓는지를 가리킨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



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은 강요
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
은 아니라 이
를 유죄로 인
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
는 판단이다.

다시 열리
는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에 따라 이뤄질 확률이 높다. 다만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가 뇌
물·직권남용 등 유죄로 인정된 혐
의에 비해 비중이 작아 형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선고하고
70억5281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징역 25년은 지난 2018년 6월
특검이 최씨의 2심에서 한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결과와 책임은 1심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주된 책임이 대통령과 최씨"라며 "대통령과 친분관계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와 사적행위를 해 그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 벼금간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20년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제 남은 삶이 얼마나 알 수 없으나 남은 시간 손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어린 딸을 보살피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뉴스

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민일 불법폐기물이 발생하면 그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 양에 폐기물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과정금으로 부과,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 단신 ●

'수술 후 압박 잘못'...신경 손상 환자에 1억 배상

법원 "직원이 압박 조치 과다" 항소심도 병원 책임 인정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후 잘못된 압박 조치로 신경에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법원이 병원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남해광)는 A씨(27) 등 2명이 광주의 B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병원이 A씨에게 8818만원, A씨의 가족에게 109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B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7월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고 B병원에 입원해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뒤 수술실 직원으로부터 부목과 압박붕대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신경 압박이 있었고, 이로 인해 A씨의 좌측 종비골 신경이 손상되는 등 마비증세를 보였다. A씨는 같은해 10월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마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말초신경 영구장애를 입게 됐다.

이에 A씨와 A씨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병원 수술실 소속 직원이 압박 조치를 과도하게 하면서 A씨가 종비골신경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병원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면 의료진이 시행한 십자인대 재건술 자체에는 과실이 있어보이지 않는 만큼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했다.

손님에 육설 등 식당 영업 방해 40대 집행유예 1년

법원 "만취상태서 재판 출석...법죄 엄중함 못 깨닫는 듯"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숙 판사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11시50분쯤부터 1시간40여분 동안 광주 북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에게 육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은 있다"면서도 "다면 A씨가 같은 범죄로 3례에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A씨가 만취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사회 내 처우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승진에 뇌물' 전남 산림조합 간부 벌금 500만원

조합장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산림조합장 간부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숙 판사는 뇌물공여 및 산림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공여한 뇌물의 액수나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조합의 자금 규모가 적지 않다"며 "다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조합장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짚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쯤 전남의 한 산림조합의 조합장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조합장 책상 위에 놓아두는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합장과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해 산림조합의 간부로 승진 임명되자 그에 대한 대가 및 향후 근무 과정에서의 인사상 혜택 등을 받기 위해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061)393-3200
금성미화사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